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년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4월 4일 삼척시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4월 4일

다. 심사일자 : 제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95.4.10)에서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가.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동조례 제4조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중, 1회용품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식품접객업소 면적기준을 객석과 객실면적을 포함하고,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제조
업소를 포함하며, 공중접객업소중 숙박업소 객실기준을 30실에서 7실로 확대하고,
비닐코팅 또는 접착된 종이사용억제를 위하여 1회용 광고선전물을 포함하도록 함.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문순기)

동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 2. 6 환경부령 제3호에 의거 개정 공포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회용품사용 규제 사업장 확대와 규제대상 1회용품의 품목이 확대되므로써, 하위법인 동조례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쓰레기문제는 현재 당면한 국가현안으로써, 쓰레기증량제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을 하는 학교도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의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지 ? ○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균일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에 해당됨. ○ 위반 접객업소의 규제를 위하여 대부분 균일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